

# 국방 R&D 결과물의 특허권 귀속에 대한 고찰

윤권순\* · 윤종민\*\*

## I. 서론

국방연구개발 사업은 두 가지 관점에서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첫 번째, 타국의 물리적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무기생산 및 무기 개발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다. 무기 구입만을 통해 자국을 방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즉 외교관계가 나빠질 경우 무기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첨단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항구적으로 타국의 기술개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에서 국방연구개발이 증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967년 프랑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엠바고 하라고 알려져 있다.<sup>1)</sup> 두 번째, 무기생산 및 수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이다. 특정 과학기술이 국방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민간에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은 정치적, 군사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은 각국이 정부연구개발비 중 상당 부분을 국방연구개발에 투자함을 통해 알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기준 미국의 경우 56.6%, 한국의 경우 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각 국가별 정부연구개발 중 국방연구개발비의 비중<sup>2)</sup>

(단위 : %)

구분	199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 국	-	14.4	12.6	14.6	15.9	17.6	18.0
미 국	54.1	54.9	55.7	56.9	57.9	57.8	56.6
프랑스	30.0	22.9	22.2	20.8	27.9	28.8	27.8
독 일	9.1	6.5	5.8	5.8	6.5	6.1	6.0
일 본	6.2	4.5	5.1	4.0	5.1	4.5	5.2
스페인	10.4	23.9	18.9	16.4	16.2	13.1	-
스웨덴	20.9	20.7	16.6	17.4	16.8	16.4	-
영 국	36.5	31.9	31.0	23.9	24.2	-	-
EU-27개국	15.8	14.0	12.7	11.6	12.5	-	-
OECD 국가 전체	31.2	31.2	31.8	31.9	32.9	-	-

\* 주저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02-2189-2621, Email: ksyoon@kiip.re.kr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043-261-3592, Email: cmyoon@chungbuk.ac.kr

본 논문은 다음 보고서 중 저자가 집필한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윤권순등(2010), 국방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관리방안 연구, 방위사업청.

1) Meir Pugatch등, Israel's high tech catch-up process: the role of ipr and other policies, p8

2) OECD 자료는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가용한 자료 중에서 세계 주요국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출 현황을 일관된 기준으로 통일하여 작성한 것은 OECD 자료가 유일하기 때문에 본 문서에는 이 자료를 인용하였다. : OECD(2009),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9-1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귀속 문제는 한 국가의 산업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이 같은 국방연구개발을 투자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이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국방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정책이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국방성(IDF: Israel Defence Force)는 IDF 자금 지원한 연구결과나 자체내 연구결과에 대해서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방기술이 민간에 널리 활용되어 이스라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3)</sup> 본 논문은 국방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국의 특허정책을 한국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바람직한 국방연구개발 특허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국내법제 분석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연구결과물 소유권과 관련한 규정은 「국방과학연구소법」, 「방위사업관리규정」등 관련 법령과, 「방위사업청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계약특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시제개발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규정되어 있다.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 법령, 훈령, 지침 및 계약조건들의 내용체계를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방위사업법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주요법이 ‘방위사업법’이고,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는 방위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은 이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 즉 방위사업법은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2. 방위사업관리 규정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두고 있다. 방위사업관리 규정<sup>4)</sup>은 방위사업청 훈령으로서 국방부 산하의 청 단위의 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이 상위 법규인 일반법이나 대통령령과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동 훈령이 법령체계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인 행정규칙에 속하고 있으나, 국방연구개발 사업 전체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방위사업관리 규정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sup>5)</sup> 즉 제646조 제1호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및 실시권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가지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및 ‘실시권’이 지식재산권을 의미 하는지, 유체물에 의한 소유권을 의미하는지가 불분하지만, 문맥상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사항 이므로 지식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 국가가 소유권과 실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실시권이 통상실시권인지, 전용실시권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6조 제2호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 및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3) Dan Breznitz, The Military as a Public Space-The Role of the IDF in the Israeli Software Innovation System, MIT-IPC-02-004, 2002, p9, 42

4) 방위사업청 훈령(2010. 3. 30. 개정) 제123호

5) 방위사업청 훈령 제158호(2011. 8. 9. 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6조(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 ① 방위사업청,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을 확보·사용·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가에 있음을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한다. ③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은 제18조<sup>6)</sup>는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연구주체에게 특허권을 귀속시키는 규정이며, 그 배경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출범당시 정부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운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법적 지위는 특별법상의 공공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이 국가가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실시권등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4.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은 타 과학기술 관련법의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동법에서 제시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관련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다. 동법 제11조의 3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고, 다만 국방안보상 필요한 경우등 특수한 경우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sup>8)</sup> 또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명령(대통령령)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sup>9)</sup>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을 상술하고 있다.

- 
- 6)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5호, 2010. 3.31, 일부개정]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 7) 과학기술기본법 [전문개정 2010.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1. 6.10] [법률 제10445호, 2011. 3. 9, 타법개정]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0.2.4]
-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8.11] [대통령령 제22328호, 2010. 8.11, 전부개정]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0)</sup> 동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등 정부가 무형의 결과물을 소유할 경우 협약에서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 6. 국방연구개발 개별 사업 규정 분석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방연구개발의 경우 방위사업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 정부에게 일부 실시권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방연구개발 관련 상위법은 구체적 사업계약서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또한 특수법인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산업재산권을 귀속시킴으로 해서 상위법만을 본다면 국가의 통제권이 약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별 지침을 살펴보면, 국가나 국방과학연구소가 실질적으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 사업 중 중요한 사업은 핵심기술개발 연구사업과 무기체계 개발 사업이 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sup>11)</sup>”에 의해 운영된다. 동 지침에 일반적인 사항이 담겨져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계약체결시 지식재산권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핵심기술개발은 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되며, 수행연구기관에 따라 국과연 주관과제와 산학연 주관과제로 구분된다.<sup>12)</sup>

국과연 주관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를 주관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제이다. 국과연이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국내연구개발의 형태로 정부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통합사업관리를 총괄하며, 국과연이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한다.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핵심기술연구개발 표준계약 특수조건(산학연)” 규정 제19조에서 지적소유권이 갑에게 귀속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3)</sup> 즉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개발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산학연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약체결시 국방과학연구소에 권리가 귀속되는 표준협약서를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국방과학연구소가 관리하는 사업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표준협약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무기체계 개발 연구사업은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되고 있다.<sup>14)</sup> 국내연구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11)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0-41호(2010.11.12. 제정)

12)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2조(핵심기술연구개발 구분) ①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수행기관에 따라 국과연주관과제와 산학연주관과제로 구분한다.

13) 핵심기술연구개발 표준계약 특수조건(산학연) 제19조(지적소유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확보된 특허 및 발표 논문을 사업기간 내 제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창안, 발명, 발견되거나 등록된 모든 지적소유권은 “갑”의 권리로 귀속되며, “갑”의 승인 없이 언론매체보도, 기술논문발표, 특허신청 등은 할 수 없다. : 국과연과 업체의 연구개발 계약

14)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1조(일반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관리의 기본절차) ①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체계개발단계·양산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그 기본 절차도는 별표 제Ⅱ-2호와 같다.

개발 사업은 또한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과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전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후자는 하나 이상의 업체(산·학·연 연구기관을 포함한다)가 주계약자로서 계약을 통해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위사업관리 규정 제59조 제4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과연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민군겸용 분야를 말한다)”등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무기체계 개발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과연이 체계설계를 수행하며, 구성품 수준이하의 품목은 시제업체 및 시제 협력업체를 기본설계부터 참여시킬 수가 있다. 동 사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한다.

업체 주관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기업체가 주계약자로서 정부와 계약을 통해 무기체계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형태이다. 국본·각군·방위사업청의 조정·통제 하에 업체에서 개발계획수립·설계·시제품 제작·종합군수지원요소개발·규격작성 등 기본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한다.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계약특수조건 제39조 제2항은 “본 계약과 관련되어 국가예산으로 연구개발한 일체의 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국가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산업체는 사업기간 중 획득하는 모든 기술,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가지며, 사업종료 시 국가(방위사업청)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무기체계 개발 업체는 사업기간 동안만 실시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통제함으로써, 무기체계 개량 및 기술이전 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무기체계를 생산한 후에는 기술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신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7. 소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을 연구기관에 귀속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상 필요한 경우등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법규인 방위사업관리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사업을 예외로 규정했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사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방위사업관리 규정 “제646조(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의 1항 규정인 ‘방위사업청,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을 확보·사용·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가에 있음을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 및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예외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방위사업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는다고 하겠다. 방위사업법이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방위사업관리 규정이 최종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방위사업 관리 규정 제1호와 제2호가 상호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예컨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명한 산업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나, 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1호와 배치되는 규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법을 합목적으로 해석하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명한 산업재산권은 국방연구소에 귀속되며, 기타 국방연구개발 사업은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가에 있음

을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현 법체계상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국방연구소가 발명한 사업 외에는 각 사업의 계약특수조건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개별 사업별로 적용되는 사업규정 및 표준계약서를 보면 결론적으로 국방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특허권의 귀속은 대부분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방연구소 또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입법대안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귀속을 방위사업법으로 위임시키고, 방위사업법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때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동 규정은 원칙적으로 연구수행기관에게 결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있다. 반면에, 국방과학연구개발의 경우 세부사업규정에 따르면, 대부분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재권이 연구수행 기관이 아닌 국가나 국방과학연구소에 귀속도록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국가나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특허정책은 정부 또는 준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연구주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실시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형태로 인해 정부의 국방기술에 대한 통제권이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구주체의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최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종류와 목적이 다양 해 짐에 따라, 이에 적합한 지재권 귀속 및 활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고 하겠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사업별로 타당한 지재권 관리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III. 해외법제 분석

미국, 영국,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무기체계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의 기술에 대한 통제권과 연구주체의 동기부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특허정책 개발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오고 있는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미국

미국에서 국방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국방부(the Department of Defense (DoD)), 국방고등연구개발처(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및 국내치안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등이 있다.<sup>15)</sup>

“DARPA( the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직접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기획과 관리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6)</sup> 동 조직은 th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가 발전된 조직이다.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닉 1호를 발사한 것에 자극을 받아서, 미국은 1958년 th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를 설립했다. th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술적 도약을 이루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소유되는 동료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연구결과를 바로 사용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을 취했는데, 설립 후 18개월만에 인공위성 개발을 성공시켰다. 1970년대 초반 동기관의 명칭은 the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로 변경되었다. 1990년 말까지 DARPA는 250명의 직원이 20억 달러를 사용하였다. 통상 천만내지 4천만 달러를 4년동안 지원하였다. DARPA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 하는, 군사 연구개발 부문으로부터 완전히 독

15) [http://goliath.ecnext.com/coms2/gi\\_0199-4380950/There-s-no-free-lunch.html](http://goliath.ecnext.com/coms2/gi_0199-4380950/There-s-no-free-lunch.html)

16) [http://www.livinginternet.com/i/ii\\_darpa.htm](http://www.livinginternet.com/i/ii_darpa.htm)

립된 조직이다. DARPA 매니저는 큰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DARPA가 수행하는 연구자금의 경우 Bayh-Dole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는다.<sup>17)</sup>

미국의 국방 연구개발 관련 법제는 1989년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범주의 법령이 적용되어 왔다.

첫 번째, 국방연구를 포함한 미국 연방자금에 의한 연구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이다. 1980년 “바이-돌법(Bayh-Dole Act of 1980)<sup>18)</sup>”이 그것이다. 동법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허권을 연구주체(국공립연구소, 대학, 기업)가 자체적으로 보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규정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보유여부를 비영리기관 또는 소기업은 발명의 신고 후 일정기간 내에 선택할 수 있다. (미국특허법 제202조(c)(1)).

둘째, 계약자는 연방정부기관에 당해발명의 신고후 **2년이내**(대기업의 경우 8개월; 혹은 정부 기관에 의해 승인된 추가기간내)에 당해발명에 관한 권리보유여부를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셋째, 계약자가 권리를 선택한 발명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당해 발명을 전세계에서 합중국을 위해 혹은 합중국을 대신해 실시하거나 또는 실시한 것에 대한 실시권을 가지며 이 실시권은 비독점적이며, 양도 내지 취소가 불가능한 ‘지불이 완료된 라이선스(paid-up license)’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미국특허법 제202조(c)(4)).

넷째,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신기술은 최대한 응용되도록 함으로써 미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바이돌법에는 실시를 희망하는 제3자가 정부에 대하여 실시를 신청하고 일정한 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대학 등의 특허권보유자가 신청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미국특허법 제203조: March-in right).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으로 부터 비영리기관 또는 소기업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연방정부자금으로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영리기관 또는 소기업은 발명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연방정부에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후 2년 내에(대기업의 경우 8개월) 특허를 보유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조건이다. 동 법은 입법당시 비영리기관 또는 소기업에만 적용 되었으나, 1983년 2월 대통령 비명령에 의해 중소기업 을 넘어 대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sup>19)</sup> 위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사항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사항이다. 즉 정부가 일정한 실시권을 가진다는 사항과, 일정한 경우 정부는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법제는 연방조달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과 국방연구 개발에만 적용되는 국방조달규정(Defenc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 있다. 국방부의 연구개발프로그램은 국방조달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지재권 관리에 대해서는 Defenc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sup>20)</sup> FAR과 DFARS 규정은 Departments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DARPA, the Defense Commissary Agency (DeCA), the Defense Contract Management Agency (DCMA), the 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 (DFAS), the 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 (DISA),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and the Defense Security Service (DSS)등의 연구계약에

17) Michael J. Remington, JD, The Bayh-Dole Act at Twenty-Five Years: Looking Back, Taking Stock, Acting for the Future, p7

18) 바이돌법(Bayh-Dole Act) United States Code(USC), Title 35, Chapter 18로 제200조부터 212조 중 202조 및 203조

19)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01-980T, INTELLECTUAL PROPERTY - Information on the Federal Framework and DOD's Other Transaction Authority Statement, July 17, 2001, p2

20) [http://farsite.hill.af.mil/reghtml/regs/far2afmcfars/fardfars/dfars/dfars252\\_227.htm#P2008\\_168618](http://farsite.hill.af.mil/reghtml/regs/far2afmcfars/fardfars/dfars/dfars252_227.htm#P2008_168618)

효력이 미치고 있다.

특허와 관련해서는 바이돌법과 연방획득규칙(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FAR))과 국방 연방획득규칙부록(the Defense-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Supplement (DFARS))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바이돌법은 특허권만을 다루는데 대해서 국방연방조달규정은 폭넓게 지식재산권 전체를 다루며, 컴퓨터프로그램과 기술 자료에 대해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연구기관이 특허권 소유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정부는 일정한 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즉 FAR 규정에 따라, 회사가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으나, 연방정부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sup>21)</sup> 이러한 특허정책은 보고 의무가 복잡하고 시간을 소모한다는 점에서 참여 연구기관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발명자의 발명신고를 받은 시점에서 2개월 이내 정부에 발명을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발명보고 후 8개월내, 그 밖의 경우 발명보고 후 발명보고 후 2년 내에 발명보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국방연구개발에 적용되어 왔던 법규들은 연구기관에게 특허권을 일정조건하에 귀속시키고 있으나, 일정한 기간내에 발명을 보고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유여부를 결정하는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1953년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재정적으로 미국 전체 연구개발(R&D)의 50%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에 와서 이 비율은 16%로 급감하게 되고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이 거의 70%에 육박하게 되었다.<sup>22)</sup> 그런데 이처럼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국방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매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의 경우 민간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방연구에 대한 민간 기업의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도 국방연구개발의 지식재산권 쟁점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을 가지고 가려고 변화중이나 기업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sup>23)</sup>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 기업들을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규와 달리 유연하게 연구개발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법조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법안이 “10 U.S.C. ARMED FORCES”와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다. 동 규정에 의해서 국방연구개발은 일반 연구개발과 차별화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국방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Other Transaction)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사용하는 이들 거래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sup>24)</sup> 1989년 제정된 10 U.S.C. §2371<sup>25)</sup> (10 U.S.C. ARMED FORCES)를 근거로 한 거래방법은 국방 고급 연구 프로젝트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이라 “DARPA”라 함)에 고급연구프로젝트를 위한 협력계약과 기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임시적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에서는 “기타거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

21) <DFARS 규정 중 특허권 및 기술데이터 관련 조항> 252.227-7038 Patent Rights—Ownership by the Contractor (Large Business). (b) Contractor’s rights. (1) Ownership. The Contractor may elect to retain ownership of each subject invention throughout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d) Government’s rights. (1) Ownership. The Contractor shall assign to the agency, upon written request, title to any subject invention—(i) If the Contractor elects not to retain title to a subject invention; (2) License. If the Contractor retains ownership of any subject invention, the Government shall have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irrevocable, paid-up license to practice, or have practiced for or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the subject invention throughout the world.

22) DOD Guide on Intellectual Property Practices

23) <http://www.zdnet.com/news/tech-firms-killing-off-pentagon-r-d/95994>

24)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01-980T, INTELLECTUAL PROPERTY – Information on the Federal Framework and DOD’s Other Transaction Authority Statement, July 17, 2001, p.4.

25) TITLE 10—ARMED FORCES Subtitle A

—General Military Law (§§ 101—2925) § 2371. Research projects: transactions other than contracts and grants (a) Additional Forms of Transactions Authorized.—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Secretary of each military department may enter into transactions (other than contracts, cooperative agreements, and grants) under the authority of this subsection in carrying out basic, applied, and advanced research projects. The authority under this subsection is in addition to the authority provided in section 2358 of this title to use contracts, cooperative agreements, and grants in carrying out such projects.

지 않으며 따라서 DARPA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 예를 들어 국방과 기타 목적의 사용을 위한 기술과 같은 이중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상황과 같이 법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국방부가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범위에서 수령자가 적어도 프로젝트 기금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 개정에서는 이 법에 의해 부여되는 권한을 임시적인 것에서 영구적인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법의 적용범위를 군사분야(military service)까지 확대하였다.

1993년에 의회가 1994년 회계년도를 위하여 국방승인법(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제845조<sup>26)</sup>는 국방부에 의한 취득이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에 특화된 목적을 위한 무기나 무기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형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거래에 관련된 사항이다.<sup>27)</sup> 이 법은 첫번째 유형과는 달리 연구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표준계약, 보조금 또는 협동계약이 부절적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즉 위에서 설명한 보조적 유형의 기타 거래를 사용하기 위한 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이 유형의 계약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제845조에 따른 계약은 최초에는 3년 동안 DARPA에 의해 사용되도록 제한되었으나 그 후에 개정을 통하여 그 사용을 군사분야나 기타 국방영역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이 법에 의해 부여되는 권한의 효력을 2004년 9월 30일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DARPA로 인해서 좀 더 유연해 지고 있는 있다. 미국이 국방연구개발에서 예외적으로 기업에게 지재권을 줌으로써, 기업의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받아들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sup>28)</sup> 지식재산권 부여는 기업(IBM, Hewlett Packard)에게 국방연구개발 참여에 커다란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29)</sup> 1994년 DARPA와 Hewlett Packard 사이에 체결된 ‘기타 거래’ 유형은 광전자공학 시스템과 그 부품의 제작 기술을 진전시키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30)</sup> 이 사안에서 과거에는 Hewlett Packard는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연구계약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계약에서는 Hewlett Packard를 만족시키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결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Hewlett Packard는 정부와의 연구계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바이돌법에 따르면, 발명자가 발명후 회사에 보고를 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내에 정부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에서는 이 기간을 4개월로 연장해 주었다. 또한 연방정부 자금 지원에 따른 연구결과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은 특허권 보유의사를 발명보호 이후 비영리기관이나 중소기업은 2년, 대기업은 8개월내에 해야 하는데, 이를 동 계약에서는 2년으로 인정해 주었다. 또한 컨소시엄은 발명을 유지하고 일정 조건 하에 불특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영업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DARPA는 강제실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라 생산된 기술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로 인하여 정부의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는 제한되는 반면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해당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추가적 시간을 부여하게 된다.

## 2. 영국

공공자금에 의한 연구결과에 대한 영국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연구수행주체가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자금제공 부처가 결과물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방부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sup>31)</sup>

26) Section 845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7)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01-980T, INTELLECTUAL PROPERTY – Information on the Federal Framework and DOD’s Other Transaction Authority Statement, July 17, 2001, p.5.

28) Renelle Guichard, How c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 incentives for civilian–military integration, 덴마크 학회, 2003, p14

29) Renelle Guichard, p15

30)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01-980T, INTELLECTUAL PROPERTY – Information on the Federal Framework and DOD’s Other Transaction Authority Statement, July 17, 2001, p.6.

31) Ministry of Defence Guidelines for Industry, p3 영국의 2007년 10월 1일 개정 기준

연구주체가 지재권을 가지는 일반규정은 DEFCON<sup>32)</sup> 705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방부가 소유하는 경우는 DEFCON 703<sup>33)</sup>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과는 달리, DEFCON 703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아서, 실제로 연구주체가 지재권을 가지는지, 국방부가 가지는지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DEFCON 703은 전부가 100% 자금을 주었을 경우, <표3>과 같은 환경에서만 사용된다.

<표3> 영국의 국방연구개발 관련 규정인 DEFCON 703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  |
|--|
| <p>a. 획득 지원 과제 ; 제3자 개발 프로그램, 장비, 절차, 유지 보수 계획; 제출된 시험 및 평가; 또는 방위장비 역량 매니저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p> <p>b. 영국 국방부 또는 제3자가 개발한 물건에 대한 시험 및 평가 과제</p> <p>c. 정책 또는 기관에 관련된 정부자문 또는 컨설팅 과제</p> <p>d. 국가 및 국제 표준의 개발, 창출 및 저술에 관한 과제</p> <p>e. 획득 명세서 및 사용자 요구문서의 준비에 관한 과제</p> <p>f.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결과물을 영국 국방부(MOD)가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유출 하려는 목적을 위해, 정부작전이나 정부정책의 공식화 위주의 과제</p> <p>g. 연구결과의 공개나 사용을 위해 MOD 소유가 요구되거나, 또는 다른 정부 부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MOD 소유가 요구되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과제</p> <p>h. 계약자의 서브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지재권을 보유한 장비에 대한 후속 디자인 서비스 과제</p> <p>i. 정부 보유 시설의 작전을 위한 계약</p> <p>j. 국방부 팀이나 조직에 속한 계약자 지원인력 또는 인력교체 규정을 위한 개인이나 회사와의 계약</p> <p>k. 국방부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통제가 요구되는 인프라 과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에 관한 것</p> <p>l a-k 외에 국방부가 지재권을 소유할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자가 계약결과물에 대해 활용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또는 국방부가 가진 지재권에 근거한 상대적으로 사소한 과제</p> |
|--|

미국과는 달리, 예외 규정이 매우 광범위해서, 국방연구의 경우 정부자금 제공 결과의 소유여부는 사실상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다. 미국과 유사하게, 연구개발 업체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정부는 일정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다. 영국의 특징은 정부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줄 수 있는 권한(sub-licens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34)</sup>

한편, 영국 특허법에 따르면 왕실과 정부기관만이 개인이 소유한 영국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sup>35)</sup> 다만 이러한 권한은 정부목적에 위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런 제한범위 내에서 만약 정부부처가 침해물품의 구입이나 사용과 같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는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허권자는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정부목적에 위한 사용특권은 정부기관에 의한 내부사용과 해당 부

32) DEFCON은 MOD defence conditions의 약어로서, “영국 국방부 방위 조건”을 의미한다. (This is a quick reference guide to the current MOD defence conditions (DEFCON) and their associated defence forms (DEFFORM).)

[http://www.aof.mod.uk/aofcontent/tactical/toolkit/downloads/defcons/dc\\_guide.pdf](http://www.aof.mod.uk/aofcontent/tactical/toolkit/downloads/defcons/dc_guide.pdf)

33) DEFCON 703 (Edition 11/0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Vesting In The Authority

34) Ministry of Defence Guidelines for Industry, 10.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fcons, section 6 defcon 705,

35) The Ministry of Defense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ministry of Defence, 2003.9.

처의 허가를 받은 계약자와 같은 외부 당사자의 사용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정부목적”이란 제한은 법정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국방부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권조항은 영국군을 위한 모든 장비에 관한 연구나 조달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정부목적에 위한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한 이 조항은 국방부가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부는 알려진 범위에서 사용된 발명의 범위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 프랑스

프랑스 국방연구개발 관련 법령으로는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code (CMP), General administrative clauses (CCAG), General contract data requirement (CCTG), Common Administrative Clauses (CAT)이 있다. 이 중에서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은 “General administrative clauses (CCAG)”에 담겨져 있으며, “Common Administrative Clauses (CAT)”은 보충적인 규정이다. “General administrative clauses (CCAG)” 규정은 Works CCAG, Industrial contract CCAG, (CCAG/MI), Intellectual service contracts CCAG (CCAG/PI), Routine supplies and services CCAG (CCAG/FCS)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지재권 소유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A,B,C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2009년 개정에 의해서 A, B 두 가지 경우로 다음과 같이 단순화 되었다.<sup>36)</sup> 즉, 옵션 A는 실시권은 연구기관이 가지고, 지재권은 정부가 가지는 것이다. 옵션 B는 지재권은 연구기관이 갖는 것이다. 동 규정은 또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구분하였으며, 연구기관은 2년 동안 발명의 실시를 도와주어야 한다등과 같은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국방부의 관례는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의 마케팅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하는지 여부는 자금제공을 받은 자가 결정하며,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할 경우 국방부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실시권(right of use)은 CCAG에 의해 공기업에게 제공된, 연구결과에 대한 사용권과 재생산권을 말한다. 동 사용권은 공기업의 특정목적에만 사용되며, 상업적 목적의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4. 소결

미국은 정부의 권리보다는 연구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연구개발의 특허정책이 변화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연구주체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정부는 실시권을 보유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도 타 국가에 비해서 연구주체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 입법을 통해서 일정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연구기관을 배려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국방연구개발에 민간기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보여지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의 국방연구개발 특허정책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권을 연구기관에 귀속시키고, 정부는 사용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일정한 경우 정부가 특허권을 가지고, 연구기관에게는 실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방연구개발이 활발한 주요국의 특허정책은 각국의 사정과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서 형성되어 변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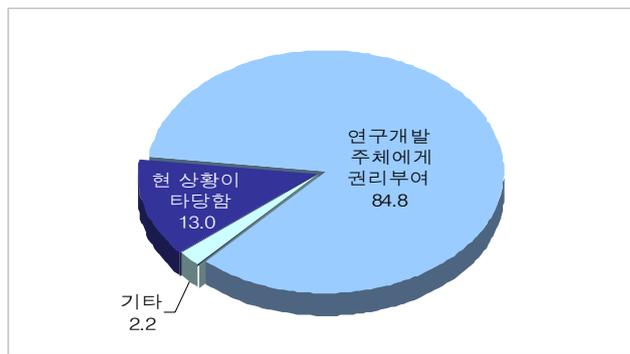
36) 2009년 10월 16일 프랑스 관보에 CCAG-PI 개정안이 정보통신(“techniqu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CT)과 산업시장 (“industrial markets” (MI))과 같이 공표되었다.

<표 4> 주요 국가별 지재권 법규 현황

국명	지재권 법규	비고
한국	지재권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보유 /일부사업 민간보유 가능(민군기술사업)	방산업체의 경쟁력강화 및 무기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예정
미국	특허권 연구기관 소유, 정부 통상실시권 보유 /기업: 발명보고의무(발명자 보고후 2개월), 특허권보유 표시의무(발명보고 후 2년, 대기업 8개월)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인 해, 민간업체에게 유리한 계약 가능 :예) 발명보고 4개월 특허권 보유의사 2년 계약만료 5년후 정부실시권행사
영국	미국과 유사하게, 연구개발 업체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정 부는 일정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고, sub-license할 권한 도 가짐. 정부가 필요한 일정한 경우 소유할 수 있음	미국에 비해 정부의 통제권 강함
프랑스	지재권 정부보유, 기업 실시권 보유/ 지재권 기업보유, 실 시권 정부보유의 두가지 선택사항	민간의 역할 확대 정책
이스라엘	국방성(IDF:Israel Defence Force)는 자금 지원 연구결과 나 자체내 연구결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비취득 정책. 국방 기술의 민간 활용으로 이스라엘기업의 경쟁력 향상 평가	국방연구개발 증가 원인:1967년 프랑 스의 군사엠바고. 공무원 발명에 대해 서는 직무발명이 적용

#### IV. 개선방안

국방연구개발 사업은 한 국가가 무기체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방위능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의 연구주체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대표적인 것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연구결과물의 활용에 따른 금전적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 참여자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sup>37)</sup> 그 결과 현재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권 및 기술자료 등의 소유권은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갖는 것에 대한 견해로 응답기관의 대다수인 84.8%는 ‘연구개발 주체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연구개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13.0%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 상황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하였다. 이 같은 응답결과는 현재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권에 대한 규정이 연구주체의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1)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견해 (단위: %)

37) 본 조사는 국방연구개발에 관련된 방위산업체,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시행하였다.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107개에 대해 92개(86.0%)를 회수하여 설문분석을 하였다.

이 같이 연구개발주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반면에, 국방연구개발의 특성상 정부는 일정한 실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현행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지재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첫 번째,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의 지재권에 대한 정부의 사용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 (자기실시, 제3자 실시하여, 무상실시, 기술개량권리 포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국방 연구개발 참여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정부가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연구개발기관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방안이다. 두 번째, 정부가 실시권(자기 실시, 제3자실시, 무상실시, 기술개량 권리)을 확보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소유권을 가지는 방안이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방산업체의 기술력 축적을 위해, 연구비 반환을 전제로 특허권보유 허용하는 방안이다.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발명자가 속한 연구기관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정책 제안은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 정부의 권리와 연구주체의 권리를 각자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소유권 및 실시권을 규정함으로써, 국방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V. 결론

국방연구개발사업은 한 국가의 안보와 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효과적인 국방연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특허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기간이 장기적이며, 단계별 연속성 강하다. 또한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용에 대한 통제가 요구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연속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가지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방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정책은 정부가 일정한 권리와 통제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술 개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첫째, 국방연구개발의 지식재산권의 실시는 군사적 적국이 이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통제할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연구개발이 무기체계 개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주체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소유권이 될 수 있고, 최소한으로는 제3자 실시허여권을 포함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이다. 소유권을 가지지 않을 경우 개량발명의 연구자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 불확실성을 가진다고 하겠고, 개량 연구권리까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주체가 국방연구개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동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일정한 권한 및 연구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등 국방연구개발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독자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향후 어떤 특허 정책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국방부(2009),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수정본).
- 강인원, 이재석(2010), 국방 R&D 투자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공정거래위원회(2000),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김성배, 박준수(2007), 민군 R&D 협력 활성화 방안, 국방정책연구.
- 김종화(2008), 미래전, 국방개혁 그리고 획득전략, 북코리아.

미래기획위원회(2010),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일자리창출.

배우철(2003), 생물학무기, 살림.

빠에르 뒤쏘즈외(김석순역)(2000), 프랑스 방위산업, 21세기 군사연구소.

정치영(2010), 국방 R&D와 성과물 관리현황, 제2회 국가 R&D 특허성과 포럼 발표자료.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igned at Stockholm on July 14, 1967 and as amended on September 28, 1979).

Dan Breznitz(2002), The Military as a Public Space-The Role of the IDF in the Israeli Software Innovation System, MIT-IPC-02-004.

DOD Guide on Intellectual Property Practices.

Meir Pugatch(2007), Israel's high tech catch-up process: the role of ipr and other policies,

Michael J. Remington, JD, The Bayh-Dole Act at Twenty-Five Years: Looking Back, Taking Stock, Acting for the Future, Ministry of Defence Guidelines for Industry.

Ove Granstrand(2003),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코펜하겐 세미나.

Renelle Guichard(2003), How c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 incentives for civilian-military integration.

Richard J. B(1996) , Effective Partnering: a report to congress on federal technologypartnerships.

The Department of Defense(2010), Proposes New Rules for Commercial Software and Technical Data Acquisitions.

The Ministry of Defense(2003),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ministry of Defence.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2001), GAO-01-980T, INTELLECTUAL PROPERTY-Information on the Federal Framework and DOD's Other Transaction Authority Statement.

Vicki Norberg-Bohm(2002), "The Role of Government in Energy Technology Innovation: Insights for Government Policy in the Energy Sector", BSCIA Working Paper 2002-14.

V. K. Gupta,(2008), India: IPR and the National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Propety Rights, vol 13.